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1000045
신청인: 주식회사 엔도어즈
피신청인 : ATLANTICA Inc.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주식회사 엔도어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3번지 대동빌딩 8층

대리인: 변리사 최효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역삼동 725-32
우일빌딩 1층

피신청인: ATLANTICA Inc., 2244 Sutie 1244 Louisville
Kentucky, 40220 US

분쟁도메인이름들은 “atlantica2.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answerable.com”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0. 11. 30.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한다)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0. 11. 30.부터 2010. 12. 10.까지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0. 12. 7., 2010. 12. 11.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0. 12. 1., 12. 6., 12. 14. 센터는 신청인에게 신청서 보정을 요청하였다.

2010. 12. 14.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0. 12. 14.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전송하였다.

2011. 1. 4.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미제출통지를 2011. 1. 4.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2011. 1. 5.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도두형 조정위원회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1. 1. 12. 도두형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받아 2011. 1. 12.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2011. 1. 12.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센터는 관련 서류 일체를 2011. 1. 12. 조정부에서 송부하였다.

신청인은 2011. 1. 19. 추가진술서류 제출 허락을 조정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조정부는 2011. 1. 19. 신청인에게 추가진술서류 제출을 2011. 1. 26.까지 추가진술서류 제출을 승인하였고 신청인은 2011. 1. 19.추가진술서류를 제출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년 설립된 후 온라인게임을 전문적으로 개발해 온 회사로서 현재까지 “군주온라인”, “타임엔테일즈”, “쿵파” 및 “아틀란티카” 등 다수의 온라인게임을 개발하였다.

신청인의 “아틀란티카(Atlantica)” 온라인게임은 소위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이 게임(MMORPG: Multi-user Online Role Playing Game)으로서 신청인은 2007. 4. 11. 이를 공개한 후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한 결과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문화관광부의 이 달의 우수게임상을 수상한 이래 여러 나라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고,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대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게임서버스가 제공되기에 이르렀고 2009년도에는 2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2010. 11.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700만명의 회원을 갖는 게임으로 성장하였다.

신청인은 2007. 3. 19. 위 게임의 영문명칭인 “ATLANTICA” 표장에 대하여 상품류구분 제16류, 문방구, 만년필, 메모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위 표장에 대하여 2008. 5. 6. 등록 제0745731호로 상표등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표장, “ATLANTICA 亞特蘭蒂卡”, “アトランティカ” 표장들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대만, 일본(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포함), 유럽공동체 등에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았다.

분쟁 도메인이름은 2007. 6. 14. 등록되었으나 분쟁 도메인이름을 입력하여 접속하여 보면 WORLDDOMAIN.COM이 제공하는 파킹서비스로 연결될 뿐이고 달리 분쟁 도메인이름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신청인은 “아틀란티카(ATLANTICA)” 게임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 후 분쟁 도메인이름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0. 10. 11. 등록명의자측에 이메일을 보내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등록명의인측은 양도대가로 금 3,500만원을 요구하였고 결국 양자의 입장 차이가 커 양도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후 분쟁 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에게 이전되었고 분쟁 도메인이름이 이처럼 피신청인에게 이전된 후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피신청인은 미합중국 켄터키 주에 본사를 갖는 법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미합중국 켄터키 주에는 피신청인 명칭을 갖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분쟁 도메인이름의 최초 등록명의인은 물론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고 있지 않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atlantica” 표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보다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신청인이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나타내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표장일 뿐 아니라, 신청인은 위 표장에 대하여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고, 분쟁 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B.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5. 검토 및 판단

A. 절차진행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의하면 분쟁조정절차진행언어는 조정부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의 약관의 언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 약관 언어는 영어이다. 그러나 절차규칙 제11조는 양당사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부에서 별도로 언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등록기관의 약관의 언어가 영어이지만 신청인이 한국어로 신청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신청 전에 신청인과 등록명의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양도 문제로 한국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 피신청인측이 한국어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진행언어를 한국어로 진행하는 것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조정부는 이 사건의 절차진행언어를 한국어로 할 것을 결정한다.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B. 서비스표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분쟁 도메인이름 중 숫자 “2” 는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com” 은 최상위도메인이름의 확장자에 불과하므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의 식별력 있는 요부는 “atlantica” 라고 할 것이다. 한편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atlantica” 와 신청인의 등록 제0745731호 상표 “ATLANTICA” 를 대비하여 보면 영문 소문자 및 대문자라는 차이가 있을 뿐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므로 분쟁 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위 등록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C.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의 “아틀란티카(Atlantica)” 온라인게임은 2007. 4. 11.자 공개 후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고, 2008년 문화관광부의 이 달의 우수게임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고,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대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게임 서버스가 제공되기에 이르렀고 2009년도에는 2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2010. 11.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700만 명의 회원을 갖는 게임으로 성장하였고, 다른 한편 신청인은 위 게임의 영문 명칭인 “ATLANTICA” 표장에 대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이 등록되기 이전인 2007. 3. 18.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08. 5. 6. 등록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표장, “ATLANTICA 亞特蘭蒂卡”, “アトランティカ” 표장들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대만, 일본, 유럽공동체 등에서 다수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았는바, “ATLANTICA” 온라인게임의 매출규모, 게임사용자수 등에 비추어 위 온라인게임의 표장인 동시에 등록상표인 “ATLANTICA”는 전 세계적으로 저명성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을 최초로 등록받은 자 및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분쟁 도메인이름 또는 그 요부에 대하여 한국 또는 기타의 국가에서 상표, 서비스표 기타 여하한 지적재산권의 등록출원을 하거나 이들 권리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D.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atlantica”가 신청인의 “ATLANTICA” 표장과 유사한 사실, 분쟁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시점이 신청인이 “ATLANTICA” 온라인

게임을 출시하고 대대적인 선전 활동을 개시한 직후인 사실,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존재를 발견한 후 등록명의인의 연락처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때 등록명의인측은 3,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양도대가로 요구한 사실, 이 사건 절차 진행 중 분쟁 도메인이름을 양수받은 피신청인의 명칭 및 주소지가 가공의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향후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6. 결정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항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인 <atlancica2.com>를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도 두 형
1인 조정부

결정일: 2011년 3월 25일